

중기경영진흥원

가업 SUCCESSION 플랜

2027년 7월, 가업승계의 **세제 지원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표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기준)

WHY NOW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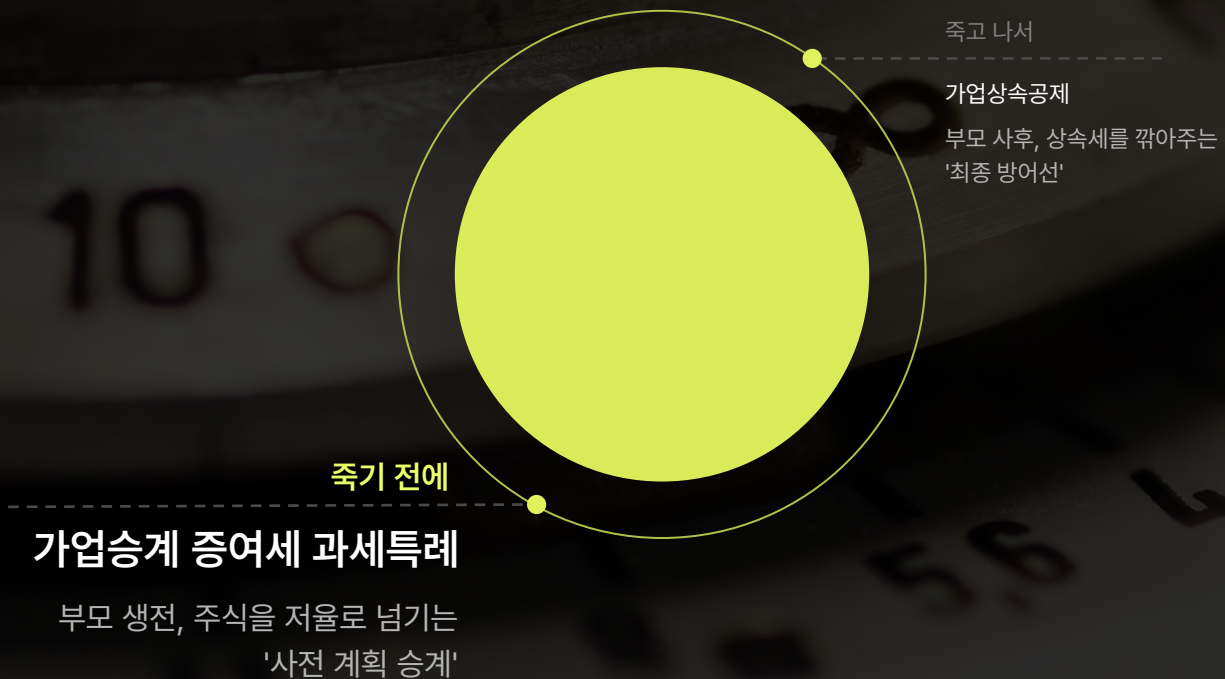
경영 기간이 짧거나 자녀의 사전 종사 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개정 이후 공제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세법 개정 전, 지금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항목	현행	개정
대상업종	대분류 등 기준 16개 (+개별법을 규정에 따른 업종)	세세분류 기준 727개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 등)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
상속인 사전 종사	2년 이상	5년 이상
업종 변경	대분류 내 허용	심사 후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최대 공제 한도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경영연수 1년당 20억 원 계산 (한도 1,000억)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3~7배	2~3배

TWO PATHS

가업승계를 완수하는 2가지 축

상속 시점은 대표님이 정할 수 없지만, 증여 시점은 대표님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승계를 선제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표님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사전상속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상속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확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 중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사전상속입니다.

핵심 개념

사전상속이란

미래 사망시점의 상속대상자산 가치를 현재 시가 수준으로 고정해, 상속세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사망 전 상속' 개념입니다.

상속은 지금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세는 미래의 사망시점 가치로 계산됩니다.

EXAMPLE

사전상속 예시

동일한 자산이라도 상속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수치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용부동산 가치

100억

>

20년 후(사망예상시점) 예상가치

300억

20년 후 상속세의 차이는 무려 **110억**입니다.

일반상속

145억 납부

사전상속

법인화 후 지분가치 80억(100억×80% 조정 후)에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80\text{억} - 10\text{억}) \times 10\% = 7\text{억}$ 증여세 납부

(미래 상속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35억(일괄공제) - 7억(기납부세액)

사전상속 적용 시 상속세 **28억** 납부

PROCESS

사전 계획 승계, 4단계로 완성됩니다

증여특례를 활용한 사전 승계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세율 혜택과 사후관리 안정성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1 진단

현재 지분 구조, 비상장주식 가치, 가업요건을 정밀 진단합니다.

2 밸류 조정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를 조정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3 증여 실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저율 과세로 지분을 이전합니다.

4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요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각 단계는 최소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개정 전 완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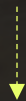
CONCLUSION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증여특례로 승계하십시오

승계는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낮출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기업가치를 낮추는 2가지 방법'

순손익가치 DOWN

- 대표이사 보수 현실화
- 임원 퇴직금 한도 극대화
- 손익 인식 시점 조정

순자산가치 DOWN

- 배당 실시
- 차등배당
- 가족법인
- 이익소각
- 유상감자

CONCLUSION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3가지 실행전략

순손익가치 = 최근 3개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순손익액이 줄어들수록 평가가치도 낮아집니다.

01 대표이사 보수 현실화

동종업계·직무 기여도에 맞는 수준으로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법인 순이익 자체를 낮춥니다.

유의 과다보수는 부인 리스크가 있어 객관적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02 임원 퇴직금 한도 극대화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사전 개정, '3년 평균급여×10%×근속연수×2배' 한도를 최대화합니다.

유의 정관 개정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03 손익 인식 시점 조정

재고자산 저가법, 감가상각 가속화 등 합법적 회계정책 변경으로 최근 3개년 순손익을 조정합니다.

유의 임의적 변경은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이니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본 전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하며, 세부 설계는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CLUSION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5가지 실행전략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순자산가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01 배당 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사외 유출시켜 순자산가치를 직접 감소시킵니다.

02 차등배당

대주주는 배당을 낮추고 자녀에게 집중, 자금이전과 잉여금 축소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03 가족법인 활용

지주회사 구조로 지분을 재편해 배당소득을 분산하고 소득세를 최적화합니다.

04 이익소각

잉여금으로 대주주 지분 일부를 매입 후 소각해, 잉여금과 지분율을 동시에 조정합니다.

05 유상감자

자본감소 절차로 잉여금과 자본을 함께 축소시켜 평가액을 낮춥니다.

차등배당·이익소각은 초과배당 증여세·의제배당 이슈가 있어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BENEFIT vs RISK

지금 준비하는 대표님과, 미루는 대표님의 차이

지금 준비하면 얻는 3가지 이점

01

상속대상 재산 가액 확정

사망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자산가치 상승분을 배제하고, 현재 시점의 낮은 가치로 물려줄 자산의 가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02

리스크 최소화

사후관리 5년 적용으로 자산유지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3

짧은 업력도 효과 극대화

경영기간 10년 이상이면 현행 기준을 충족해, 업력이 30년 미만이어도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할 3가지 리스크

01

타이밍의 상실

개정 후에는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특례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02

경영 유연성 악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신사업 진출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업종 변경도 제한됩니다.



03

세부담 급격한 증가

공제 대상 토지의 한도가 축소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동일)

1. 대상 확장

구분	현행	개정안
가업의 정의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사항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업종 중 727개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 등
백년소상공인 및 명문장수기업 포함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2. 한도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한도	(특례한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특례한도) 30년 이상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 부모의 경영연수 X 20억원 * 한도: 1,000억원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특례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	3~7배 → 2~3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 한도: 특례대상 토지 1m² 당 1,000만원
겸업	[신설]	(겸업) 주업종(특례업종)-부업종(비특례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특례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3. 유연성 및 사후관리

구분	현행	개정안
피상속인 요건 강화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10년 → 30년 이상(대표이사 재직 50% 이상)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
상속인 요건 강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2년 → 5년 이상
업종변경	대분류 내 허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사후관리 요건 강화	사후관리 5년(수증자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정)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정 제외	사후관리 5년 → 10년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정)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정 제외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 만큼 기간연장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4. 사업승계 지원

구분	현행	개정안
제 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 주주 > 주식·사업용 자산 양도세 20% 감면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세무대리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휴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